

현안과제연구
2012. 5. 11

부여군 효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송 두 범

차 례

I. 효 복지정책의 필요성	1
II. 국내 효 복지정책 사례	2
III. 부여군 효 복지정책 추진방안	5
IV. 정책제언	12
<부 록>	13

I. 효 복지정책의 필요성

- 충남도는 2007년 말을 기점으로 고령사회로 진입, 출산을 저화와 농촌지역의 젊은 인력 전출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2009년 현재 부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4.6%로 청양군, 서천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령사회(20%이상)에 접어들었음
- 반면, 외환위기 이후 개인 저축률이 감소하여 노후생활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인빈곤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
 - 사회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노인관련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
- 노인자살자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80세 이상은 3배 증가)
 - 독거노인이 늘고 노후 경제적 부담 등이 자살률 증가요인으로 작용
- 이와 같이 핵가족화되고, 노인세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효경중심의 미풍양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빈곤화, 자살자수는 증가하는 상황임
- 정부에서는 2007년 8월 3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효복지정책의 강화필요성이 대두
- 부여군 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고, 효공원 건립, 장수노인수당, 노인돌봄여행,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사업을 계획 및 추진중에 있으나, 부여군 실정에 부합하는 보다 다양한 효복지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Ⅱ. 국내외 효복지정책 사례

1. 효행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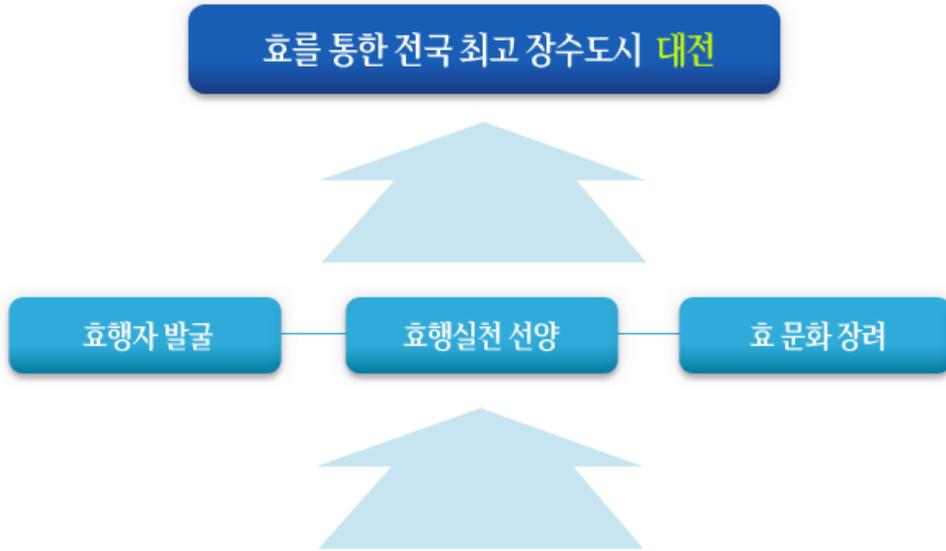
- 2012년 5월 현재 전국의 효행지원조례는 62건, 입법예고 3건
 - 충남은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서천 등 6개 시군제정
 - 규칙은 3건 제정(경기, 정읍시, 김천시)
 - 훈령은 “영광군행남효행상기금관리운영규정”(부록 참조)

2. 울산광역시 : 효문화지원센터

- 효문화지원센터(울산광역시 효문화선양회에서 운영)
 -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효문화프로그램 개발, 효행장려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과 교육, 홍보 기능
- 실버효 사관학교
 - 65세 전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에 대한 강의, 토론 및 실습 등 총64시간의 전문교육과정
 - 효문화 전문강사 양성, 추후 울산지역의 유치원,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등에 무료 효교육 강사로 활동

3. 대전광역시 : 효문화지원센터

1) 설립목적



구분	(1)효행발굴 (표창,선양)	(2)효행실천 분위기 조성	(3)효 문화 장려(제도정착)
단기과제	①효행자 표창 확대 ②효 실천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③효 실천 우수어린이집(유치원)선정 ④노인의 날 등 기념 행사 지원 ⑤모범 요양보호사 발굴 표창 ⑥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⑦효 문화 정립을 위한 경로잔치 개최 ⑧총효예 교실 운영 ⑨효행가족 찾기	①복지만두레를 통한 효 문화 선양 ②효 실천교육 강화(유치원,초,중,고) ③효 인부 전화 및 효 편지쓰기 운동 전개 ④효 실천 글짓기대회 ⑤효 실천 스티커제작부착 ⑥효 모범기정 사례발표 대회 개최 ⑦100세 이상 축하잔치 ⑧장수축하금 지원	①노인 장기요양 효 서비스 제공 ②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③효 가요제 개최 지원 ④어르신 우대업소 확대 ⑤효도관광 실시 ⑥효행관련 민간단체 육성 ⑦경로당 무료급식 확대 ⑧경로당-학교 결연사업 ⑨효 수법학교 육성 ⑩3세대 가족수련캠프운영 ⑪효 관련 상품 개발
중장기 과제	①효 장학금 조성 ②효자 효부 효행록 발간 ③효 문화 진흥을 위한 의식 조사	①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②부모 등을 위한 주거 시설 공급	①효 문화진흥원 대전유치 ②효 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③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④유케어(U-care)시스템 설치 운영

2) 설립근거

- 전국최초의 효문화지원센터
- 2007년 효행장려법이 제정된 후 2009년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효행장려조례제정

3) 주요사업

- 한밭실버포럼운영
 - 매월 1회, 조찬모임, 효문화진흥과 노인복지시책 발전방향 모색 정례워크숍
 - 노인회, 효관련단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전공 전문가 등
- 효문화증진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지원
 - 시내학교 백일장 참여유도, 노인회 및 복지시설과 행사, 사회단체 통한 효행자 발굴
- 효문화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 효실천사업장발표 및 효간판 부착 : 참여업소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우수참여업소 표창 등
 - 효문화진흥원 유치 범시민 운동전개 : 연중캠페인, 홍보브로셔 제작, 스티커 제작 등
- 전문인력 양성
 - 효문화전문인력 양성 : 효지도사 교육과정운영(연3회/150명), 효지도사 활동기반 조성(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복지관, 노인정, 군부대 등 강사활동)
- 효문화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 대전 전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군부대 효교육실시
 - 효지도사 출장강의(현지도사 대전지역 : 200여명)
 - 매주 토요일 효학교 개설 강의
-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 홍보
 - 효행자표창, 민간단체에서도 효행자 표창 및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 지급
 - 주요수록내용 : 과거와 현재의 효행 행정, 효관련 시설물
 - 배부활동 : 효관련단체 유치원 초중고교대학 등 배부
-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효행청소년단 운영 : 매월 1회 토의 및 교육, 매월 선진도시 및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방문 봉사
 - 봉사활동 지원 : 효전속악단운영(노인회, 복지관 등 매월방문공연)

Ⅲ. 부여군 효 복지정책 추진방안

1. 부여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추진방안

1) 효행교육 강화 및 노인체험활동 실시

- 초등학교 사회 지역화교과서 “사회과 탐구”에 효행교육 내용 포함
 - 부여교육청과 협의하여 교과서 보완수정함
-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 실시
 - 효행교육지도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각학교별 분기당 1회 정도 효행교육 실시
- 노인체험활동
 - 지역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인형극, 역할극 등을 통해 노인체험활동교육일 실시

2)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조례에 규정된 “부여군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 부여관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설치 및 운영함
 - 효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전시 효문화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효행발굴, 효행실천분위기 조성, 효문화장려 등의 사업을 추진함
- ※ 현실적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어려울 경우는 지역내 민간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효행사업에 대해 공모하고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3) 장수노인수당을 효도수당제로 전환

- 부여군의 경우 85세 이상 월3만원, 100세 이상 월10만원을 장수노인수당으로 지급
- ‘장수노인수당’ 보다는 ‘효도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효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장수노인수당'은 향후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순히 장수에 대한 수당지급은 설득력이 낮음
- 따라서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울타리 내에서 거주하면서 모범적 효행을 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효행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청주시, 전주시 : 4대 이상 70세 이상 노인 한명당 매월 3만원 지급

수원시 : 3세대 만 80세 이상 노인 한명당 연2회 5만원씩 지급

익산시, 보령시, 구미시 등에 효도수당제 도입운영중임

4) 효행우수 표창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 부여군수로부터 효행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으면 입학금, 수업료 등 보조
 - 일반인 효행표창을 받으면 일정기간 지역내 문화재, 공원 등 문화예술시설, 공연의 무료이용 및 요금할인
 - 효행표창 받은 자에 대해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지원 등

2. 신규 효행장려 사업

1) 중고등학교에 효행봉사동아리 설립 및 지원

- 부여군내 중고등학교에 효행봉사동아리의 설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
 - 부여군 교육청과 협력하여 효행봉사동아리 운영비 일부를 지급함
-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청소, 어르신들과 대화 및 안마해드리기, 음식나누기, 노래 및 장기자랑 등을 통한 세대간 공동체 형성

2) 효행교육지도사 교육비 지원

- 부여군내 주민중 효행교육지도사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군비로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대전에 효지도사 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어 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효행교육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부여군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어르신 우대업소 지정 및 운영

-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부여지역내 음식점, 미용실, 이발소 등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우대업소”를 지정하여 운영
- 어르신 우대업소 지정을 위해 지역내 음식, 미용, 목욕, 이발, 안경, 사진 등의 업주와 사회적 협약을 통해 10-30%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르신 우대업소”라는 표지판을 설치
- 부여군청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전화번호부 등에 어르신 우대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경로당, 읍면사무소 등에 참여업소 명단을 비치
- 어르신 우대업소에 참여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일정기간 면제, 모범업소 표창,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4) 모범 효행가정 사례발표 대회 개최 및 확산

- 모범 효행가정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사례의 확산을 위해 사례발표 대회 개최
 -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모범효행가정을 선정하여 표창
 - 표창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범효행가정의 효행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효문화 확산에 기여
- 모범 효행사례에 대해서는 책자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부여지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효행교육의 자료로 활용

5) 찾아가는 효행프로그램 운영

- 부여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행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내 경로당을 찾아서 음식물 접대, 문화공연, 봉사활동 등을 추진
 - 기 추진중인 단체가 있다는 군청의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
 - 특히, 초중고등학생과 함께 효행프로그램을 운영(초중고등학생들의 춤, 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연활활 프로그램)

6) 효행상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

-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민간기업에서 기부한 기금으로 효행상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부여군에서도 향토기업가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군민모금 등을 통해 효행상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공연수입, 바자회 등 군민의 참여를 통한 기금조성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역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한 기금조성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이러한 기금조성을 통해 효행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독거노인 복지강화 사업

1) 민관이 함께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기본생계지원 사업

-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 부여군,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기본생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부여군청 : 지원대상 독거노인 선발
 - 민간단체(새마을회 등) :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 및 안부전화하기
 - 공공기관 :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제공(식사 및 밑반찬, 보청기, 틀니 등)

2) 부여군 노인복지센터 설립운영

○ 재가노인복지사업

- 사업목적 : 보살핌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지역의 어르신께 봉사원을 파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신의 기능을 유지·향상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도모

- 사업내용

분류	사업명	사업의 내용
대상자 관리사업	1) 대상자선정 및 대상자관리	- 대상자발굴 - 상담
서비스지원사업	2) 가사지원서비스	- 청소 및 주변정돈 - 취사 및 장보기 - 세탁서비스
	3) 신체적수발서비스	- 목욕서비스 - 이미용서비스 - 외출 및 병원동행서비스 - 행정업무대행
	4) 우애서비스	- 말벗서비스 - 전화안부서비스
	5) 정서서비스	- 명절맞이 사랑나누기 - 야외나들이 - 어버이날 행사 - 김장서비스 - 영정사진촬영서비스
	6) 기타서비스	- 의료기관 진료의뢰 - 차량지원서비스
	지역자원발굴사업	7) 후원서비스
8)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활용 - 간담회 및 교육 - 어울림 한마당
9) 홍보		- 홍보

- 이용대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가정.

-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노인가정
- 2) 65세 이상 단독세대 노인가정
- 3) 65세 이상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노인가정
- 4) 수발가족 등 원조체계가 거의 없거나 부적절한 노인
- 5) 일상생활동작 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 6)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정서적 능력, 인지적 능력이 손상된 노인
- 7) 영양학적 개입이 필요한 노인
- 8)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 노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사업목적 : 독거노인의 사후 발견, 외부 소통이 없는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정망 구축
- 수혜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소득,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동거 유무 상관없음), 독거노인현황조사를 통해 서비스제공 대상 독거노인 선정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안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무선페이징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 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서비스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 연계 -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 조정
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독거노인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 대상자별 인적사항, 생활실태,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추가 복지욕구 등 기록 -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으로 update 실시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 조사 및 민간협력을 통한 신규 복지자원 발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해 드리는 제도
- 수혜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건강상태 4~5등급대상 어르신(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55점미만)
- 사업내용

- : 신체수발 : 목욕도움 ,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몸단장, 머리감기기 등
- : 가사지원 :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취사
- : 개인활동지원 : 산책, 장보기, 은행업무대행, 병원동행, 병원 약 타오기 등
- : 정서지원 : 말벗, 생활상담 등

4. 노인일자리 사업

1)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 공익형 일자리 사업
 - 경로당도우미, 어린이안전지킴이, 보육시설환경정리, 거리환경지킴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문화재지킴이, 등산로지킴이, 어린이놀이터지킴이등
- 복지형 일자리 사업
 - 무료급식도우미, 독거노인안전돌보미
- 교육형 일자리 사업
 - 보육시설 동화구연, 보육시설 교육보조재 제작지원 등
- 생산형 일자리 사업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일자리 확충
 -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등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

예) 일본의 이로도리 : 나뭇잎을 도시락 장식품으로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V. 정책제언

1. 효행장려

○ 교육청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 효행의 실천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시기의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함
- 즉, 효행일기, 효행편지, 효행독서, 효행사례발표, 효행 글짓기 및 그리기, 효토론시간, 효행사례집, 효생활발표회 등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되 학교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교육청 뿐 아니라 군청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운동을 위해 지역내 민간단체, 노인관련기관 등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1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효행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효행을 위한 전시성 행사나 단발성 행사보다는 표시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어버이날 등에만 집중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소 어르신네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행프로그램을 기획

○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시설설치 및 프로그램보다 적은 재정투자로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

- 초중고등학생 자원을 활용하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바람직함
- 지역내 민간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군민이 가진 재능을 조사, 분석하여 재능나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
예) 음악, 무용, 사진 등의 재능보유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 독거노인복지강화 및 노인일자리 사업

○ 독거노인복지강화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내 민간단체에 “부여노인복지센터”를 위탁설립 및 운영

< 부 록 >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2.01 조례 제19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충청남도 교육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여군 효문화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 운용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4. 효문화 증진을 위한 시책 홍보
5.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6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행남효행상기금관리운영규정

제정 1986. 4. 7 규정 제110호

개정 1991. 9.18 규정 제130호

개정 1994. 9.16 규정 제162호

개정 1999. 1. 9 규정 제186호

개정 2003. 9.19 규정 제230호

(일부개정) 2004.07.26 훈령 제 239호

(일부개정) 2011.07.20 훈령 제 3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상을 주기위하여 주식회사 행남사에서 기탁한 효행상 상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1999.1.9>

제2조(명칭) 상의 명칭은 "행남 효행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과 관내 덕망있는 인사를 위촉하여 위원장을 포함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와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1.7.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제5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당해년도의 행남 효행상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1.7.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정한다.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읍면장은 행남 효행상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읍면 심의위원회의 심의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 7.26>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1매
4. 기타 공적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제8조(수상후보자 자격) 행남효행상의 수상 후보자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영광군 관내 10년 이상 거주자
2. 효행과 열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제9조(시상인원 및 부상) ① 이 상의 시상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

② 이 상의 부상은 1회 1백만원으로 하고 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시상시기) ① 이 상의 기금은 주식회사 행남사에서 기탁한 2천6백만원을 적립 운영한다. <개정 1999.1.9,2011.7.20>

② 동 시상금은 상금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자를 최대로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금 관리한다. 다만, 이자는 정기예금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시부터 시상금 집행시까지 차기 시상금 집행이 편리한

방법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③ 동 시상금의 원금은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만으로 운영한다. 다만, 이익금이 상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서 사무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은 시상기금으로 적립한다.

④ 동 시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목적에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주식회사 행남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기금의 보관관리) ① 이 기금은 영광군수가 보관 관리한다.

② 이 시상금은 관리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1.7.20>

제14조(심사위원회 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각종위원회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9.19>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9.18 규정 제1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16 규정 제1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9 규정 제1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9 규정 제2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26 훈령 제23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3호,2011.7.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